정 식 재 판 청 구

사 건 2000고약 000 상해

피고인 ㅇㅇㅇ

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20〇〇. 〇. 〇. 벌금 〇〇〇원에 처한 다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바, 피고인은 동 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기관	약식명령을 한 법원 (형사소송법 453조2항)	제출기	간	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 터 7일이내(형사소송법 453조1항)
상소권자	※ 아래(1)참조	관	할	약식명령을 한 법원 (형사소송법 453조2항)
제출부수	청구서 1부	관련법	규	형사소송법 448~458조
불복절차 및 기간	(기각 결정) ·즉시항고(형사소송법 360, 362조) ·3일(형사소송법 405조) (제1심법원의 판결) ·항소(형사소송법 357조) ·7일(형사소송법 358조)			

- ※ (1) 상소권자(형사소송법 338, 340, 341조)
 - 1. 검사
 - 2. 피고인, 피고인의 법정대리인
 - 3.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,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는 못함